

농지관리기금 운용실적보고서

제5권 자산관리부문

2000. 4

농 립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자산관리평가)

총괄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장 나승렬
 작성책임자 : 각 지표별 책임자 참조
 연 락 처 : 농림부 농지과(☎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0343-420-3581)

차 례

4. 1 기금자산 운용의 적정성	1
□ 지표관리방향	3
□ '95~'99 추진실적 요약	5
□ 평가 내용별 추진 실적	9
4. 1. 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9
4. 1. 2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24

지표명	4.1 기금자산운용의 적정성	가중치
		10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225)

세부지표명	4.1.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가중치
		6점

평 가 내 용

- 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 기금자산 운용정책(목표수익율, 적정유동성, 허용위험도 등)의 명문화 및 활용의 적정성
 - 운용자산(금융기관 예치, 단기금융상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선정 및 자산 배분의 적정성
- 2.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 운용대상(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의 투명성
 - 운용상품의 수익율, 유동성 및 안정성(운용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포함) 평가시스템의 적정성
 -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외부자문 포함)

세부지표명	4.1.2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가중치
		4점

평 가 내 용

- 1. 자금운용의 성과평가**
 - 운용자산별 (또는 운용상품별) 기준수익율 책정의 적정성
 - 기준수익율과의 성과 차이
- 2. 자금운용의 합리성**
 - 자산관리체계 개선 노력
 - 위험관리(신용위험/유동성위험)의 적정성

여 백

I. 지표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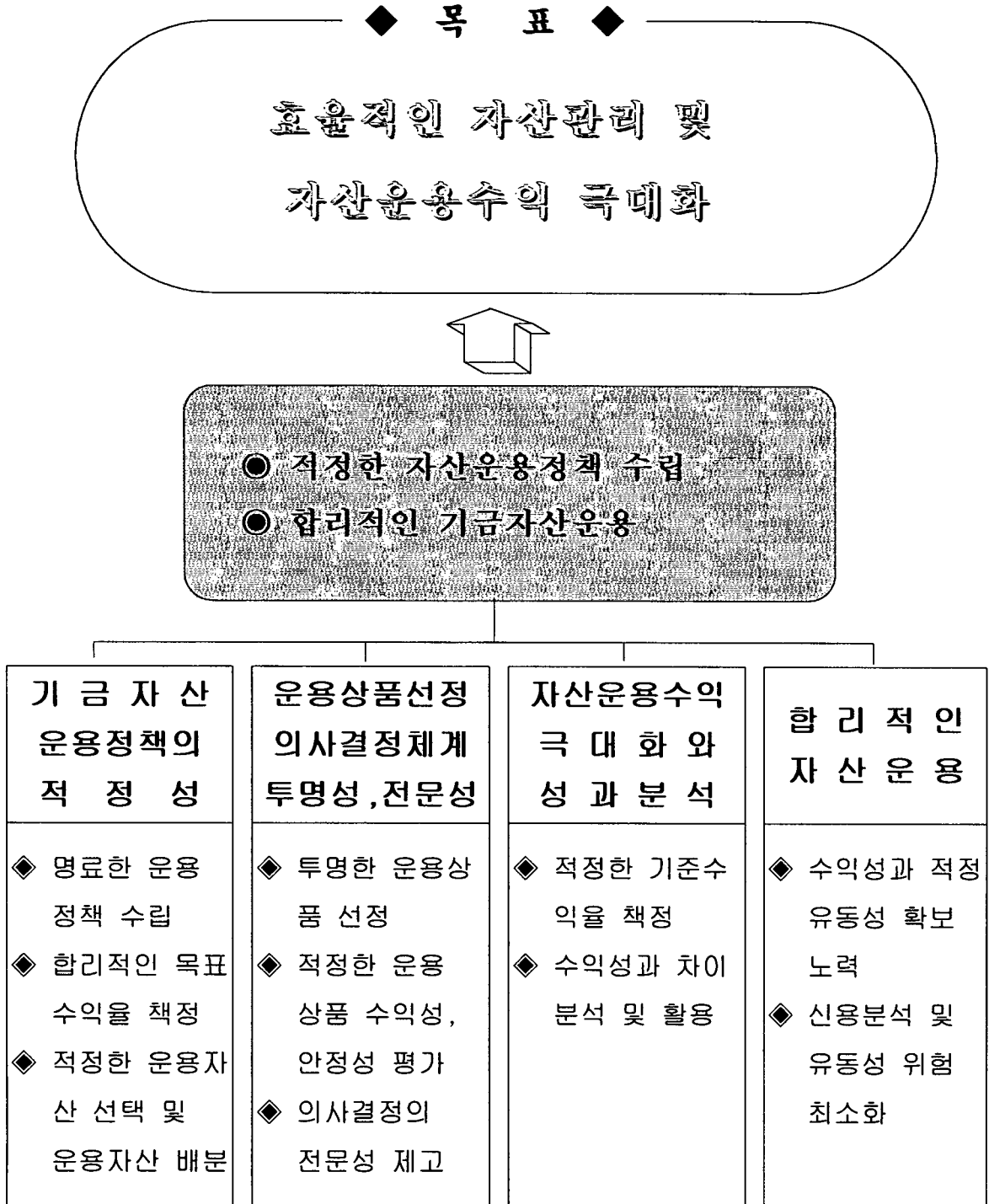
1. 운용 여건

- 운용자산의 대상이 대기성자금에 한정됨
 - 관리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한정됨
 - 당년도 수입이 전액 지출계획에 반영되므로 장기성 예금이 없고, 사업자금지원, 차입금상환등을 위한 지불준비금에 한정
- 기금자산 운용범위 제한
 -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국공채매입, 금융기관예금 등 자산운용 범위 제한
 - 기금계정이 설치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산운용으로 금융기관 선정, 금융상품 선택에 한계

2. 지표관리 방향

- 기금운용정책의 명문화 및 전문화
 - 목표수익율, 적정유동성, 허용위험도등의 명문화 및 활용
 - 운용자산 및 금융상품의 적절한 선정과 배분
-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 금융기관선정의 투명성 제고
 - 운용대상 금융상품의 수익률, 안정성, 유동성 향상
- 자산운용 성과 평가
 - 운용대상 금융상품 기준수익율의 적절한 책정 운용
- 자금운용의 성과평가
 - 자산관리체계 개선노력
 - 적절한 위험관리로 부실금융자산 발생 방지

3. 지표관리 체계도



II. '95~'99년도 추진실적 요약

4.1.1 기금자산운용의 적정성

가중치

6점

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 자산의 특성과 『목표수익율제도』 운영

- 농지관리기금은 당해년도중에 연간계획의 100%를 집행해야 하는 사업성 기금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어려우므로 보유시재는 지불준비금 성격의 대기성 자금임
- 제한된 운영 범위내에서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목표수익율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목표수익율 = 기준수익율 - 적정유동성
 -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율 달성
 - '99실적 수익율 : 5.49%(목표수익율 : 5.43%)

□ 운용자산 선정 및 적정배분 노력

- 금융기관 선정근거 및 절차의 명문화(관련법령, 규정)와 투명성으로 금융기관간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 방지
 - 금리입찰, 이면계약 금지 등
- 기금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기성 자금 운용
 - 금융기관 선정 : 농·수·축협 중앙회
 - 금융상품 선정
 - 7일 이내 운용자금 : 보통예금
 - 8일 이후 운용자금 : MMDA
 - 1개월이상 운용자금 : 정기예금

2.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 의사결정체계 확립 및 명문화

- 기본운영체계 법제화
 - 근거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금법시행령 제34조,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59조
 - 기본운영방향
 -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농업자금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결정, 금융상품 선정등 여유자금 운영
 - 수신기관의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금리입찰이나 이면계약 등의 금지

□ 금융기관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한 자금운용

- 일자별 자금 소요시기와 자금 수지상황 및 보유금액의 변동상황을 매일 점검함으로써 보유기간별로 금융상품을 선택·운영
- 선택과정에서 금융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최고 수익율의 상품 선정
 -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

4.1.2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가중치
4점

1. 자금운용의 성과평가

□ 기준수익율 책정·운영

- 기준수익율 : CD, 정기예금등 동일/유사한 금융상품의 연평균 이자율
- 목표수익율 : 기준수익율 - 요구불예금의 비율

□ 기준수익율과의 성과 차이 분석 →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95 ~ '99년도 실적수익율 분석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식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연간평균잔실적	연간평균잔실적	A	157,950	136,874	201,757	188,218	94,942
자산운용계획	이자수익계획	B	10,850	12,318	14,563	24,286	4,169
자산운용실적	이자수익실적	C	16,330	13,400	20,794	25,278	5,217
◦ 실적수익율	실적수익/평균잔	D=C/A	10.33	9.79	10.30	13.43	5.49
◦기준수익율	CD, 정기예금	E	11.45	9.51	10.55	11.50	5.75
실적대비	%	D/E	90.22	102.94	97.63	116.78	95.48
적정유동성	평균잔/365×20	5.48%	0.63	0.52	0.58	0.63	0.32
◦목표수익율	기준율-유동성	F	10.82	8.99	9.97	10.87	5.43
실적대비	%	D/F	95.47	108.90	103.31	123.55	101.10

※ 실적수익율 = 연간총수익/대기성자금의 연간 총평균 예금잔고

- 기준수익율은 대기성자금 전액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였을 때 수익 가능한 수익율임
- '98년도에 실적율이 116.78%로 초과된 것은 IMF 시대의 각 금융기관들의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예금유치 노력의 결과로 지나치게 높은 우대금리를 예금주에게 지불한 때문이며,
- '95년도에 수익율이 90.22%로 저조한 것은 국채발행시기와 상환시기의 불일치, 추석·연말사업비 소요자금 해당액의 요구불예금 관리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한데에 기인함
- '99년은 IMF의 여파로 예금평잔이 전년도의 50.4%에 불과하여 자금압박이 심하였으나, 운용의 효율성면에서 실적 수익율은 목표 수익율을 초과 달성하였음

2. 자금운용의 합리성

□ 금융기관 선정

- 농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농·수·축협에 자금 예치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4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부 훈령) 제58조
- 정부조직법 개편('98. 6. 해양부 신설)에 따라 수협과의 자금 거래 중단

□ 예금상품의 선정

- 대기성 자금(유동성) 확보와 예치이자 수익을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금 수입·지출 일정계획의 철저한 관리
 - 유동성 자금 : 요구불(보통 또는 MMDA) 예금으로 예치
 - 1개월 이상 여유자금 : '98. 7월까지의 CD, 그 이후에는 CD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정기예금 예치 운용

□ 위험관리의 적정성

- 농·수·축협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채권이 적고 위험관리 부담이 적음
 - IMF체제 하에서도 지불중단이나 이자지급 보류사례가 없었음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세부지표명	4.1.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가중치
		6
평가내용	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1. 기금자산 운용정책 수립 시행

가. 농지관리기금자산의 운용 여건

□ 농지관리기금의 자산 구성내용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및 교환·분합사업 등에 관한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 농지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농지조성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99년도 자산구성 내용 >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농지관리계정		농지조성계정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 산 총 계	4,403,527	100.00	2,476,509	100.00	1,927,018	100.00	
1. 유동자산	2,144,528	48.70	327,200	13.21	1,817,328	94.31	
- 당좌자산	504,735	11.46	327,200	13.21	177,535	9.21	
예 금	89,776	2.04	42,571	1.72	47,205	2.45	
외상매출금	126,303	2.87	0	-	126,303	6.55	
단기대여금	248,702	5.66	245,719	9.92	2,983	0.16	
미 수 금	781	-	50	-	731	0.03	
미수 수익	39,173	0.89	38,860	1.57	313	0.02	
- 재고자산	1,639,793	37.24	0	-	1,639,793	85.10	
제 품(조성토지)	14,357	0.33	0	-	14,357	0.75	
재공품(미완공사)	1,625,436	36.91	0	-	1,625,436	84.35	
2. 고정자산	2,258,999	51.30	2,149,309	86.79	109,690	5.69	
- 투자자산	2,258,985	51.30	2,149,309	86.79	109,676	5.69	
장기대여금	2,258,985	51.30	2,149,309	86.79	109,676	5.69	
- 유형자산	14	-	0	-	14	-	
차량운반구	3	-	0	-	3	-	
비 품	11	-	0	-	11	-	

- 농지관리계정의 자산은 영농규모화사업 시행에 따른 농민에 대한 대여금 23,950억원(96.71%)과 미수이자 389억원(1.57%), 예금 426억원(1.72%)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금자산 운용 효율성 평가의 대상은 예금임
 - 농지조성계정의 자산은 대체농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투자액 및 조성토지매각대 원리금 상환 약정액 17,661억원(91.65%)과 공자기금예탁금 1,000억원(주 1), 농지재개발사업용자금 127억원(5.85%), 예금 472억원(2.45%)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금자산 운용 효율성 평가의 대상은 예금임
- 주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농지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 예탁 기금임

□ 여유자금의 정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여유자금이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의미함
 - 일상적인 운영자금
 -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용자·출자·투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

□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

- 여유자금은 1년이상 장기보유가 가능한 자금이어야 채권, 주식, 부동산, 신탁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연간기금운용계획 내용에서처럼 농지관리계정은 정부출연금의 충분치 못하여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재정용자특별회계·국채관리기금 차입금을 차입하여 수입재원에 충당하고 있으며, 농지조성계정도 당년도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의미의 여유자금은 없음
- 연도말 시재금 발생 주요사유는 농지관리계정의 경우 농업인들의 용자 원리금 조기(중도)상환 때문이고, 조성계정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농지조성비의 초과 수납에 기인한 것으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자금이며,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곧 사용될 사업자금이므로 여유자금에 속한다기보다는 대기성자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의 기금의 용도 규정 중 여유자금의 운용 범위를
 - 1)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 2) 국·공채의 매입
 - 3) 금융기관에의 예치로 정하고 있으나
- 공자기금예탁이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월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운용정책 수립이 완료됨
- 회계년도중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대기성 자금에 대하여는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그 운용범위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의거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치, 금융기관에의 예치에 국한하고 있음

□ 대기성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 농지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은 당해 회계년도중의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투자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과, 일상 운영자금으로서 수입시기와 지출시기의 단기 차이에서 오는 일시 보유 대기성자금으로서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또는 단기성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계정을 농협과 축협에('98까지는 수협 포함) 설치하고, 보유자금을 예치하고 있음
- 또한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서도 농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농협과 축협에('98까지는 수협 포함) 기금자금을 예치할 것을 정하고 있음

나. 기금자산 운용 계획 수립 및 집행

□ 농지관리기금 자산 운용 절차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주체인 농림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6. 30)
-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 확정(9. 30)
-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림부장관이 공공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月 31日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운용계획수립과정에서 단계별로 사업별 시행목적과 효율성, 재원조달 및 차입금상환, 사업자금지원, 자금운용수익 목표 등 자금운용정책이 검토됨

< 농지관리기금 자금관리 체계도 >

자금관리 단계	수행기관	주요내용
다음연도기금사용요구 (4월25일)	사업시행자 (지자체,공사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수입) 기금사용요구사항(지출)
↓		
운용계획수립(6월30일) 기획예산처협의(8월31일)	위탁관리자 농림부	- 재원조달 및 기금사용요구내용 검토·조정 - 사업시행방향,기금운용정책 검토 - 정부출연금, 재특·국채차입금, 사업별 투융자규모등 확정
↓		
국무회의 심의 상정 및 대통령재가 (9월30일)		- 재원조달금액과 사용금액이 동일하므로 여유자금 없음 → 부동산,채권,주식,투자신탁등 자산보유가 없음 (여유자금발생시 공자기금예탁)
↓		
국회제출(9/30일) 상임위원회 보고		- 사업자금 일시보유금 수익관리
↓		
자금수입·지출계획 통보(12월31일)	사업시행자 위탁관리자 농림부	정부출연금, 대여원리금회수, 농지 조성비회수, 간척지매각대회수 등의 자금수입계획과 사업자금지출 계획 감안하여 재특·국채차입금의 차입시기와 금액을 정함
↓		
자금회수 (매일)	위탁관리자	정부출연금, 재특·국채차입금, 대여원리금, 농지조성비, 간척지매각대등 자금회수
↓		
월별자금집행계획수립 (수시)	위탁관리자	월별자금수입지출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자금보유상황에 따른 지출 및 예금관리 단기계획(일자별)을 필요시 수립 시행
↓		
자금집행 및 운용관리	위탁관리자	은행예치 및 이자수입 관리
↓		
기금 결산 (익년도 2월말)	위탁관리자 농림부	

다. 기준수익율의 결정

□ 기준수익율의 산출 방법

▣ 기준수익율 : 운용자산별로 동일/유사한 위험을 가진 대체운용 자산의 수익율

- 농지관리기금의 주 운용자산은 전액 대기성 자금임
- 대기성자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율이 낮은 요구불예금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고율의 중장기예치(1개월이상) 금융상품 비율을 높여야 함
- 기준수익율은 '95~'99년도중 선택가능한 1개월이상 장기예치 금융상품의 최고이율을 연평균하여 각 년도의 기준수익율을 정함
- '95~'98. 7월까지의 CD금리가 가장 높았으나 '98. 8월부터는 정기예금 금리가 유리하여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수익율 산출근거로 적용

< '95~'99년도 기준이율표 >

(단위 : %)

월 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계
1월	11.50	10.00	10.46	14.55	6.80	53.31
2월	11.50	10.00	10.46	14.55	6.30	52.81
3월	11.50	10.00	10.46	14.55	6.30	52.81
4월	11.50	8.80	10.46	14.55	5.70	51.01
5월	11.50	9.70	10.46	14.55	5.50	51.71
6월	11.50	10.70	10.00	14.30	5.50	52.00
7월	11.50	8.50	10.00	10.70	5.50	46.20
8월	12.20	8.50	10.19	9.80	5.50	46.19
9월	12.10	8.50	10.19	9.50	5.50	45.79
10월	11.40	8.50	10.57	7.00	5.50	42.97
11월	11.30	10.46	10.77	7.00	5.50	45.03
12월	10.00	10.46	12.61	7.00	5.50	45.57
계	137.50	114.12	126.63	138.05	69.10	585.40
평균이율	11.45	9.51	10.55	11.50	5.75	9.76

라. 적정유동성의 결정

□ 적정유동성 산출 방법

▣ 적정유동성=기준수익율의 20/365일 = 5.48%

1개월이내에 지급하는 사업자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보유

1개월이상 보유자금은 CD, 정기예금 예치

예금연평잔의 20/365일분을 유동성자금으로 보유

- 자금운용단위가 큰 재정융자특별회계·국채관리기금 차입금상환, 사업자금지급등의 소요액을 감안한 적정 지불준비금을 확보 운용 하므로써 외부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없이 사업운영에 완벽하게 대처
- 농지관리기금 운용자금회전율은 연간 6-7회로 1회전이 2개월 미만임
- 금융상품 운용은 30~59일 이내의 예금상품을 이용
→ 사업자금지원, 재정융자특별회계·국채관리기금 차입금상환 등의 유동성 확보
- 1개월 미만 운용자금 : 요구불예금인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으로 운용
- 요구불예금의 운용규모 : 자금운용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이들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려할 때 적정유동성은 연평균 예금잔고의 20/365일분 (5.48%)

마. 목표수익율의 결정

□ 목표수익율 산출방법

■ 목표수익율 = 기준수익율 - 적정유동성
 = 기준수익율 × (1-0.0548)
 ■ 목표수익 = 예금연평균 × 목표수익율

- 기금운용계획편성시는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월별자금 운용계획에 의한 연평균잔고 산출
- 자금의 조기회수노력, 초과회수노력등으로 실제 연평균잔고는 증가 (IMF체제 당시에는 회수실적 감소)

< 목표수익율 결정 >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공식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예금평잔	경영평가목표	A	124,318	126,504	186,868	207,708	81,939
	연간평잔실적	B	157,950	136,874	201,757	188,218	94,942
	실적율(%)	B/A	127.05	108.19	107.96	90.61	115.86
기준수익율(%)	CD,정기예금	G	11.45	9.51	10.55	11.50	5.75
적정유동성(%)	평잔/365×20	H=G×0.0548	0.63	0.52	0.58	0.63	0.32
목표수익율(%)	기준율-유동성	G-H	10.82	8.99	9.97	10.87	5.43

< 운용자금회전을 >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공식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예금평잔	연간평잔실적	B	157,950	136,874	201,757	188,218	94,942
목적사업운용	실적	F	818,884	945,965	1,017,056	883,153	699,621
운용자금회전을	사업비/평잔	5.83	5.18	6.91	5.04	4.69	7.36

〈 '95~'99년도 기금자산운용실적 및 대비총괄표〉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식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예 금 평 잔	경영평가지표	A	124,318	126,504	186,868	207,708	81,939
	연간평잔실적	B	157,950	136,874	201,757	188,218	94,942
	실적율(%)	B/A	127.05	108.19	107.96	90.61	115.86
자산운용수익	계 획		16,600	18,068	20,399	31,011	10,169
	일반예금	C	10,850	12,318	14,563	24,286	4,169
	재정예탁금		5,750	5,750	5,836	6,725	6,000
	실 적		22,080	19,166	26,556	32,005	11,217
	일반예금	D	16,330	13,400	20,794	25,278	5,217
	재정예탁금		5,750	5,766	5,762	6,727	6,000
	실적성과율(%)	D/C	150.50	108.78	142.78	104.08	125.13
목적사업운용	계 획	E	825,055	956,522	1,025,584	885,686	699,749
	차입금상환		319,624	351,439	406,352	178,094	197,543
	규모화사업등		280,000	336,540	348,398	359,849	248,042
	농지조성사업		225,431	268,543	270,834	347,743	254,164
	실 적	F	818,884	945,965	1,017,056	883,153	699,621
	차입금상환		317,916	351,170	404,464	177,592	197,541
	규모화사업등		280,000	336,540	348,398	359,849	248,042
	농지조성사업		220,968	258,255	264,194	345,712	254,038
	실적율(%)	F/E	99.25	98.89	99.16	99.71	99.98
기준수익율	CD,정기예금	G	11.45	9.51	10.55	11.50	5.75
적정유동성	평잔/365×20	H=G×0.0548	0.63	0.52	0.58	0.63	0.32
목표수익율	기준율-유동성	G-H	10.82	8.99	9.97	10.87	5.43
운용자금 회전율	사업비/평잔	5.83	5.18	6.91	5.04	4.69	7.36
계획수익율	수익/평잔	I=C/A	8.72	9.73	7.79	11.69	5.08
실적수익율	수익/평잔	J=D/B	10.33	9.79	10.30	13.43	5.49
수익성과율	실적/계획	J/I	118.46	100.61	132.22	114.88	108.07

2. 운용자산 선정 및 자산 배분

가. 운용자산 선정 노력

- 농지관리기금은 회계년도중 기금의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유하는 대기성자금이 운용자산에 해당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기금계정을 농·축협에 설치하고, 보유자금을 예치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 의거 농림사업시행을 위한 농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농협과 축협에 기금자금을 예치시켜 농림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에 협력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자금 주거래은행 : 농협, 축협
- 금융기관 신용도
 - 농업관련분야 은행인 관계로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적어 부실채권이 적음
 - 재무구조도 양호하여 IMF체제하에서도 지불중단이나 이자지급보류등의 위험성이 없는 양호한 금융기관임
- 공자기금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대기성 여유자금 100,000백만원을 '9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
 - '92년도에 예치한 100,000백만원은 5년후인 '97년도에 만기 채예치 2002년에 만기가 도래
 - '93년도에 예치한 15,000백만원은 '98년도에 만기회수, IMF 체제하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자금으로 집행

〈 재정예탁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탁회계	예탁일자	예탁금액	회수액	재예탁	예탁조건	회수일자
계		215,000	115,000	100,000		
재정융자 특별회계	'92. 5.30	20,000	20,000	0	5년만기	'97. 5.30
	'92.11.30	30,000	30,000	0	연5.0%	'97.11.30
	'92.12.11	50,000	50,000	0	"	'97.12.11
	소계	100,000	100,000	0		
"	'93.12.20	15,000	15,000	0	5.0%	'98.12.20
공공자금	'97. 5.31	20,000	0	20,000	6.0%	-
관리기금	'97.12.19	80,000	0	80,000	"	-
	소계	100,000	0	100,000		-

나. 운용 자산 배분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계정은 별도 계리

- 단기금융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 중장기금융상품 : CD, 정기예금

대기성자금은 1개월 미만의 요구불예금, 1개월 이상의 CD, 정기예금등으로 운용

□ 단기지불준비금의 규모 판단

- 원리금회수, 농지조성비등의 회수, 정부출연금 출연일, 국채차입일, 정기예금 만기해약일등 일자별 수입금액과 사업자금공급 및 차입금상환계획을 일자별로 추정하여 입출금시 수시로(또는 매일) 구두 또는 서면 결재등으로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결정

〈 '99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상환실적 〉

(단위 : 백만원)

상 환 일	원금잔액	상 환 액			비 고
		원 금	이 자	계	
'99.03.31	747,251	7,716	12,543	20,259	
'99.06.30	739,535	7,714	10,889	18,603	
'99.09.30	731,821	7,713	10,900	18,613	
'99.12.20	724,108	7,714	10,234	17,948	
계	716,394	30,857	44,566	75,423	

※ 차입년도 : 1988-1997

융자조건 : 2년거치 18년 균등분할상환, 연 5.0~6.5%

〈 '99 국채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실적 〉

(단위 : 백만원)

월 별	이 납 부 일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상환	금리(연)	원리금상환액	비고
계						122,118	
1월	'99. 1. 8	'98.10. 9	90,693	3개월	10.48%	2,376	이자
3월	'99. 3.17	'98. 3.18	100,000	3개월	18.41%	4,603	이자
4월	'99. 4. 8	'98.10. 9	90,693	3개월	10.48%	2,376	이자
	'99. 4.15	'96.10.16	313,737	6개월	10.94%	17,161	이자
	'99. 4.22	'97. 4.23	266,684	6개월	11.27%	15,028	이자
	'99. 4.28	'97.10.29	83,290	6개월	11.16%	4,647	이자
5월	'99. 5.14	'95.11.15	158,510	6개월	10.21%	8,092	이자
6월	'99. 6.17	'98. 3.18	100,000	3개월	18.41%	4,603	이자
7월	'99. 7. 7	'99. 4. 8	69,994	3개월	6.48%	1,134	이자
	'99. 7. 8	'98.10. 9	90,693	3개월	10.48%	2,376	이자
9월	'99. 9.17	'98. 3.18	100,000	3개월	18.41%	4,603	이자
10월	'99.10. 7	'99. 4. 8	69,994	3개월	6.48%	1,134	이자
	'99.10. 8	'98.10. 9	90,693	3개월	10.48%	2,376	이자
	'99.10.15	'96.10.16	313,737	6개월	10.94%	17,161	이자
	'99.10.22	'97. 4.23	266,684	6개월	11.27%	15,028	이자
	'99.10.28	'97.10.29	83,290	6개월	11.16%	4,647	이자
11월	'99.11.13	'95.11.15	158,510	6개월	10.21%	8,092	이자
12월	'99.12.14	'99. 9.15	88,477	3개월	9.40%	2,079	이자
	'99.12.17	'98. 3.18	100,000	3개월	18.41%	4,602	이자

3. 추진 효과

□ 대기성 자금의 운용기준 및 목표수익률 부여로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99년도의 경우 연간 실적 수익률이 5.49%로서 목표수익률(5.43%), 계획 수익률(5.08%)을 초과 달성

□ 금융기관 선정 근거 및 절차의 명문화 내지 투명성으로 금융기관간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 방지 → 시중금리 안정에 기여

- 금리입찰, 이면계약 방지 등

□ 안정된 금융기관 선정으로 예치금 관리 안정성 확보

-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를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운영

1. 운용대상 선정의 투명성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 금융기관 선정 기준

- 기금계정을 금융기관(농·축협)에 설치하고, 보유자금을 예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4조)
- 농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농협과 축협에 기금자금을 예치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59조)

□ 금융상품 선정 기준

- 1개월 미만 운용자금 : 요구불 예금인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
(MMDA)
- 1개월 이상 운용자금 : '95 ~ '98. 7월까지는 CD
'98. 8월부터는 정기예금

2. 운용상품의 수익율, 유동성 및 안정성 평가시스템의 적적성 (운용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포함)

□ 사업성자금으로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

- 농지관리기금은 단기 대기성자금이므로 장기적인 예금자산운용계획 수립 불가능
- 가능한 1 ~ 2개월 동안의 자금수지계획을 면밀히 검토, 대기기간에 따라 금융상품을 적절히 선정·운영 함으로써 자금운영 수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3.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 (외부자문 포함)

- 자금운용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위임
- 기금위탁관리자는 각 금융기관의 자문을 받아 최고수익율의 예금을 선정 관리

- 운용자산의 주요 대상이 단기 대기성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운용이므로 기금관리주체는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선부서인 기금위탁관리자가 관리하도록 위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5조)
 - 기금위탁관리자는 일자별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보유기간별로 금융상품을 선택 운용
 - 7일이내 소요자금은 보통예금, 8일이상 1개월미만 소요자금은 기업자유예금, 1개월이후 소요자금은 전액 정기에금으로 운용함
 - 단기사요자금이라도 소요시기 이전에 입금될 자금을 매일 추정, 검토하여 그 금액은 기업자유예금과 정기에금으로 관리할 것을 결정 예치함
- 전문금융기관의 자문을 받아 최고수익율의 상품선정
 -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등

4. 추진 효과

- 금융기관선택 명문화(법률 및 훈령으로 규정)로 투명성 제고
- 기금관리자의 금융기관 임의선택에 따른 예금유치경쟁 억제로 시중 금리안정에 기여
- 기금위탁관리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여 금융상품 선택의 능률성, 신속성 제고 및 기금자산 증대에 기여
- 사업자금의 소요시기를 감안한 장단기 예금상품의 선택으로 사업자금 운용상 유동성확보와 동시에 수익성도 제고
- 자금수지상황 및 보유금액의 변동을 매일 점검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

세부지표명	4.1.2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가중치 4
평가내용	1. 자금운용의 성과 평가	

1. 운용자산별 (또는 운용상품별) 기준수익율 책정의 적정성

□ 기준수익율의 책정

- 기준수익율 : 동일/유사한 금융상품의 평균수익율
- 목표수익율 : 기준수익율 - 요구불예금의 비율

- 기준수익율
 - 이자율이 가장 높은 CD와 정기예금등 동일/유사한 금융상품의 연평균이율을 기준
- 목표수익율
 - 1개월미만 운용자금인 요구불예금의 비율을 차감하여 목표수익율을 결정
- 실제로 기준수익율은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수익률이며 요구불예금 비율을 차감한 목표수익율을 달성하였음

〈 단기금융상품의 이자율 〉

(매년 7월30일 농협금리 기준)

(단위 : 연리, %)

예금종류		예치기간	'95	'96	'97	'98	'99
보통예금		요구불	1.0	1.0	1.0	1.0	1.0
기업자유예금	1억 이상	8일이상	2.0	2.0	2.0	2.0	2.0
	10억이상	8일이상	-	-	9.0	8.0	5.0
정기예금	일반	1개월	2.0	3.0	3.0	3.0	3.0
	큰만족	3개월			10.9	11.6	5.5
CD	매일고시	30~59일	11.5	8.5	10.0	10.7	4.8
	매일고시	60~90일	11.5	10.7	10.1	10.7	4.8
기업금전신탁	매일고시	50일(실효)	5.43	4.97	5.02	5.02	3.50
	매일고시	1년6개월	12.58	11.50	11.61	11.62	8.10
기준수익율	매월평균		11.45	9.51	10.55	11.50	5.75
목표수익율	유동성차감		10.82	8.99	9.97	10.87	5.43

※ 음영부분이 실제로 금융상품을 운용한 예금이율임

- 1개월미만의 유동성예금은 '95~'96년도에는 기업자유예금과 기업금전신탁을 이용하였으나 '97년 7월부터 고금리 신종예금인 MMDA를 이용하였으며,
- 1개월 이상 보유자금은 CD로 관리하다가 IMF체제하에서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98년 8월 이후 CD금리가 폭락하여 정기예금을 이용하였음

2. 기준수익율과의 성과 차이

□ 기준수익율과의 성과 차이 분석

〈 '95~'99 실적수익율 분석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공식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연간평잔실적	연간평잔실적	A	157,950	136,874	201,757	188,218	94,942
자산운용계획	이자수익계획	B	10,850	12,318	14,563	24,286	4,169
자산운용실적	이자수익실적	C	16,330	13,400	20,794	25,278	5,217
○ 실적수익율	실적수익/평잔	D=C/A	10.33	9.79	10.30	13.43	5.49
○ 기준수익율	CD, 정기예금	E	11.45	9.51	10.55	11.50	5.75
실적대비	%	D/E	90.22	102.94	97.63	116.78	95.48
적정유동성	평잔/365×20	5.48%	0.63	0.52	0.58	0.63	0.32
○ 목표수익율	기준율-유동성	F	10.82	8.99	9.97	10.87	5.43
실적대비	%	D/F	95.47	108.90	103.31	123.55	101.10

· 실적수익율 = 연간총수익/대기성자금의 연간 총평균 예금잔고

- 기준수익율은 대기성자금 전액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였을 때 수익가능한 수익률임
- '98년도에 실적율이 116.78%로 초과된 것은 IMF 시대의 각 금융기관들의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예금유치 노력의 결과로 지나치게 높은 우대금리를 예금주에게 지불한 결과이며,
- '95년도에 수익율이 90.22%로 저조한 것은 국채발행시기와 상환시기의 불일치, 추석 연말사업비 소요자금 해당액의 요구불 예금관리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한데에 기인함
- '96년, '97년은 대체로 잘 운용되었으며, 99년은 IMF의 여파로 예금평잔이 전년도의 50.4%에 불과하여 자금압박이 심하였으나, 최선의 관리로 운용의 효율성면에서 실적수익율은 목표수익율을 초과 달성하였음

1. 자산관리체계 개선 노력

□ 금융기관 선정

-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
- 기금위탁관리자(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자금지원 금융기관(농·축협, '98까지는 수협도 포함)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보유자금을 예치·관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4조)
- 농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농협과 축협에 기금자금을 예치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59조)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과 농림사업시행정책에 부합되게 금융기관을 선정 운용·관리
 - 선택의 폭은 다소 좁아졌지만 나름대로의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금융기관 구조조정
 - 1998년 6월에 정부조직 변경에 의하여 해양부가 신설됨에 따라 1999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거래은행에서 제외됨
 - 농·축협 통합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행될 경우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중에서 주거래은행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 계획

□ 예금상품의 변경

- 예금상품의 금리변동에 따라 유동성확보와 1개월 이상 예치자금의 수익성제고를 감안하여 금융상품을 변경하여 왔으며,
- 특히 '97년 9월부터는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과 큰만족 정기예금이 고금리상품으로 개발되어 종전의 일반 기업자유예금이나 기업금전신탁 대신 새로운 예금상품을 선택함
- 1998년 7월부터는 CD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정기예금이 자금관리의 주상품이 되었음
- 자금운용 전문기관인 주거래은행과의 협조로 당해 금융기관의 상품중 농지관리기금운용에 가장 유리한 신종 상품을 권유받아 검토 운용함으로써 최고의 운용수익을 달성하는 등 금융상품 선정을 위한 이율변동을 항상 예의 주시·대처하고 있음

2. 위험관리의 적정성 (신용위험/유동성위험) 관리 노력

- 기금의 운용자금은 농협과 축협을 주거래은행으로하여 금융자산을 관리 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임
 - 이들 은행예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안전하게 보호됨
 - 농업관련분야 은행인 관계로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적어 부실채권이 적었으며 재무구조도 양호
 - 실제로 IMF체제 하에서도 지불중단이나 이자지급 보류등의 위험성이 없는 양호한 금융기관임

3. 추진 효과

-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 선택을 최적화함
-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 선택으로 금융자산손실 최소화
- 기금자산 및 재무구조 건실화에 기여

<덧붙임>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자금운용 관련법령 및 규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훈령)

여 백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기금의 운용관리 (제35조)

-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
-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
- 기금은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관리

○ 기금의 회계기관 (제37조)

-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

○ 기금의 용도 (제34조)

- 여유자금의 운용 범위
 - 1) 재정용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 2) 국·공채의 매입
 - 3) 금융기관에의 예치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 기금계정의 설치 (제34조)

-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기금계정을 설치
- 기금수탁관리자(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자금지원 금융기관(농·축협)에 기금계정을 설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제5조)

- 기금등의 관리자는 여유자금에 있는 경우 그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 관리기금의 일시차입 (제16조)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
-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하여야 함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
 - ※ 의무예탁기금지정 → 고수익상품 투자로 기금재원 증식에 한계
- 여유자금이라 함은 그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 1) 일상적인 운영자금
 - 2)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자금
 - 3)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융자·출자·투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 4)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훈령)

○ 여유자금운용기준 (제58조)

-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운용 하되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자기금에 예탁

○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제59조)

- 기금위탁관리자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여유자금 운용여건, 기금설치목적 수행에 대한 예탁 대상 금융기관의 기여도, 예치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융기관을 결정
- 농업자금지원 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여 농업자금 공급능력의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
- 여유자금은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신기관의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기금위탁관리자가 예치금융기관의 변경 또는 금융기관별 예치비율을 조정할 때에는 사전 농림부 사업자금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금리입찰을 할 수 없으며,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체결 행위를 하지 않음